

대전지방법원 2024. 12. 18 선고 2024가단230722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11. 27.

판결 선고2024. 12. 18.

주 문

1. 피고는 망 C(D생)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소외 E, F, G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24. 5. 1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소외 E, F, G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正本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1).

[인정근거]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망 C(D생)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소외 E, F, G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33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正本 송달일 다음날인 2024. 5. 1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,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윤종섭

별지

1) 피고는 2023. 10. 20. 대전가정법원 2023느단10507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.